

- 서울종합방재센터 홍보영상물 제작 -

과업지시서



행복을 위한 약속

2013. 5.

서울종합방재센터

[Http://119.seoul.go.kr](http://119.seoul.go.kr)

1. 과 업 명 : 서울종합방재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

2. 과업목적

-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안전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각종 재난 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활동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,
- 119를 통하여 『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서울! 시민이 보다 행복한 서울!』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미지 전달

3. 과업내용

- 사업범위 : 서울종합방재센터 홍보 영상물 기획·촬영 및 제작
- 사용언어 : 4개국어(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일어)
- 상영시간 : 10분 이내
- 제작방법
 - HD급 고화질로 영상제작 및 브로셔 제작
 - 실사촬영, CG/특수효과 등을 활용하여 제작
 - 인트로, 엔딩 30초분량 CG활용
- ※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영상물상영 등 다용도 멀티미디어 영상 콘텐츠로 활용할 것을 감안하여 제작
- 납품일시 및 수량
 - 납품일시 :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
 - 납품장소 : 서울종합방재센터
 - 납품수량 : 4개국어(한국어,영어,중국어,일본) 더빙 촬영원본, 마스터본 1개, DVD 200개(4개국어 합본)
- 명칭구분
 - 발주자 : 서울종합방재센터
 - 도급자(과업수행자/제작사) : 계약자

4. 과업 추진 방향

- 방재센터의 설립목적, 주요기능, 활동사항, 비전 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메인 컨셉과 제작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여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게 제작 한다
- 시나리오 구성에 의한 방재시스템 업무의 신속·효율성 및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안전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U-안전서울 실현을 위한 적극적 모습을 시각화 할 수 있도록 한다
- 다양한 내·외국인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보다 이해가 쉽고 친근감 있게 제작 한다
- 단조롭고 설명 위주의 홍보물이 아닌, 흥미를 끌 수 있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영상물을 염두에 두고 스토리보드를 구성 한다
- 관련 촬영은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를 새롭게 촬영토록 한다
단, 서울종합방재센터와 협의에 의해 기존 영상물을 활용하여 재편집 할 수 있다
- 영상은 컴퓨터그래픽등을 이용한 최신기술을 활용하며, 이미지, 자막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각효과 극대화 한다
- 글자의 모양과 크기, 색상은 시나리오에 맞게 선택하고 다이내믹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화면구성, 기획편집토록 한다
- 구성안과 시나리오를 작성 후 다양한 특수효과를 이용한 디지털 편집, 성우더빙, 음향, 효과음, 자막작업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제작완성 한다
- 제작방향, 기획, 시나리오는 제작업체가 구성하여 용역 계약 체결 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
- 가급적 장기적으로 쓸수 있도록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영상물 제작
- 4개 국어(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일어)로 제작 한다

5. 과업수행 방법

가. 과업수행계획서 제출

-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
- 과업수행계획서는 용역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 되도록 한다
 -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
 -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(이력서 등) 및 운영계획
 -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·방법 및 추진일정표 등
- 계약자는 과업수행 계획에 따라 용역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토록 한다
- 과업수행 보고
 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경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 - 과업수행보고는 용역 착수 후 매월 계획서대비 진행율등 과업수행에 관한 내용 및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한다

나. 과업수행 지침

- 시나리오
 - 제작 경험이 있는 전문작가를 선정하고 성우는 인지도가 있고 발음이 명확하고 정확한 사람으로 하고 외국어일 경우 원어민 표준언어 구사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
 - 시나리오 제작과 관련 서울종합방재센터 승인 후 확정토록 한다
- 사전 검토 및 협의
 - 제작사는 배우·모델·성우·리포터 등 출연진의 선정과 작품 내용의 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검토 및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
- 저작권의 귀속
 - 제작된 홍보 영상물 및 브로셔의 모든 저작권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소유 한다

○ 저작권 및 초상권의 보증

- 제작사는 영상물 및 브로셔 제작시 필요한 각색, 모델, 배경 등이 제3자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, 이에 대한 이의 및 분쟁 발생시 제작사 책임으로 한다

○ 기획, 촬영, 섭외, 제작 전반 소요 비용

- 촬영에 소요되는 모든 소품 자제(용역포함) 구입등 제작비 일체 제작사 부담 한다

○ 수정 및 보완

- 제작사는 영상물 및 브로셔를 제작 완료 후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제작사의 비용 부담으로 이를 수정·보완하거나 새로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

○ 영상물의 시연(시사)

- 제작사는 영상물을 신속히 제작하여 서울시 영상물 심의를 받기 전 시연회를 실시한다
- 시연회에서 요구된 의견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 한다

○ 서울시 영상물 심의

- 영상물에 대한 서울시 영상물 심의 위원회에서 지시된 보완 및 수정사항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 한다
- 과업수행 완료 전 영상물에 대한 서울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사전 지시에 따른다

○ 기 타

-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· 추가과업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의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
-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
- 계약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

다. 과업수행 원칙

-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용역 내용취지의 범위에서 서울종합방재센터와 협의하여 수행토록 한다
-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과물 산출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종합방재센터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
-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,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와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
- 발주처의 방침 또는 과업수행시의 여건변동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고, 용역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수정 ·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
- 계약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물에 대한 보완, 수정등이 필요할 경우 제작자의 부담으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

라. 감독 및 협의
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정당한 업무요청에 따라야 한다
-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사전협의 하여 처리토록 한다

마. 과업수행자의 의무

- 과업수행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최대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
- 시연(시사) 및 서울시 영상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된 최종 성과물을 기일 내에 납품토록 한다
- 계약자는 성과물 사업 종료 후 1년까지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

바.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

-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
 -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
 -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 -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
 -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종합방재센터 승인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
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
- 고의로 시연회, 심의, 납품기일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될 경우
- 그 밖에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

사. 계약의 변경

- 사업의 범위가 당초의 계획과 현저하게 달라져 계약당사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허용범위 에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. 단, 당초 방침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

아. 보안사항

-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인지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도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
- 과업수행자는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전반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, 용역참여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(별첨1)를 제출하여야 한다
- 최종 완성된 영상물의 성과품은 DVD자켓을 제작, 고급케이스에 품위 있게 포장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제출하며 생산된 각종 자료와 보고서, 디스켓 등 일체의 성과품은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유로 하고,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완료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모두 제출하고 과업결과를 대외에 발표·배포할 수 없다

6. 자격제한

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 제작업을 등록한자로 한다.
- 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한다.
- 원활한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업체로써 최근 2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2천만원 이상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있는 업체로 한다.
- 등록실적 마감일 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업체로 한다.
- 브로셔 제작을 위해 조달청에 출판사 신고필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한다.

(별첨1)

보 안 각 서

본인은 2013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.

1.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요청제안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,
2.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범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.

2013년 월 일

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

(인)

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귀하